증권선물위원회

의결 제2026-72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OOOOOO㈜
임직원	前대표이사, 前담당임원, 前감사
외부감사인	◎◎회계법인

2. 조치내용

○ OOOOOO㈜

- 자본시장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감사인지정 2년
- 해임권고 상당(前담당임원)
- 검찰 업무정보 송부(회사, 前대표이사, 前담당임원)
- 개선권고

○ 前대표이사 ☆☆☆
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-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10백만원

○ 前담당임원 ★★★
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前감사 ◍◍◍

- 외부감사법상 과징금(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)

○ ◎◎회계법인

- 주의

○ 공인회계사 ◆◆◆

- 주의

○ 공인회계사 ■■■

- 주의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< OOOOOO㈜ >

○ **금융자산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**

-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

○ **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사항**

- 우발사항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금융자산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와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함

< ◎◎회계법인 >

○ **금융자산 담보제공사실 주석미기재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**

- 감사인은 회사의 금융자산 담보제공사실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

나. 근거법규

○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

○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9조 등